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계획에 의거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역 내 공장 신·증설 기업 등으로 투자기업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15조)
 나. 지역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확대(안 제23조의2)
 다.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정(안 제23조의3)
 라.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26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등 관광사업 시설의 투자비 지원(안 제26조의2)
 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안 제3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8. 3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1항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성주군”을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및「성주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을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정하되”를 “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기업유치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3조 내지”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연구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등 시설보조금

제22조제2항 중 “투자금액의 20 퍼센트”를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이전기업 지원)”을 “(이전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제26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 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 설>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 설>	8.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1항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1.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삭 제>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삭 제>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성주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및「성주군 ----------.
제13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① ----------호의 어느 하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 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삭 제>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기업유치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4조, ---------- ----------.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 ---------- ---------- ---------- ---------- ---.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1. -------연구소 ---------- ----------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등 시설보조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
제23조(이전기업 지원) (생 략)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생 략)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제26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